2026. 11.

아일랜드 실연자·음반제작자간 적절한 대가의 분배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목원대학교/교수
양대승

1. 개요

아일랜드는 2026년 3월 12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2000」(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ct 2000, No. 28 of 2000, 이하 "구법")의 제208조와 제287조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2026」(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mendment) Act 2026, No. 4 of 2026, , 이하 "개정법")을 공포하였다.[1] 이 개정법은 음반의 공연 및 방송 시 발생하는 적절한 대가(equitable remuneration)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관한 실체적·절차적 규정을 신설하고,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국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2][3]

개정의 직접적 계기는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2020년 RAAP v PPI 판결(C-265/19)이다.[4] 이 사건에서 실연자 단체인 RAAP과 음반제작자 단체인 PPI 사이에, 유럽경제지역(EEA) 밖의 국가에 속한 실연자가 참여한 음반에 대해서도 실연자가 적절한 대가의 분배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사법재판소는 대여·대출권 지침(Directive 2006/115/EC)이 WIPO 실연·음반조약(WPPT)에 합치하도록 해석되어야 하므로, 적절한 대가는 EU 회원국 국민뿐 아니라 WPPT의 다른 당사국 국민에게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5]

개정법은 2025년 6월 13일 기업·관광·고용부 장관에 의해 법안(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mendment) Bill 2025, No. 33 of 2025)으로 발의되었고,[6] 이후 하원 심의를 거쳐 2026년 3월

1)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mendment) Act 2026 (No. 4 of 2026), 제1조. 개정법은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mendment) Act 2026"으로 인용되며(개정법 제5조 제1항), 2019년까지의 기존 개정법들 및 구법과 함께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cts 2000 to 2026"으로 통합 인용되어 하나의 법으로 해석된다(개정법 제5조 제2항).

2)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mendment) Act 2026, 전문. 〈https://www.irishstatutebook.ie/eli/2026/act/4/enacted/en/pdf〉, (검색일: 2026.9.22).

3) 아일랜드법상 음반에 대한 권리는 구법 단계에서부터 저작권(copyright) 자체로 보호되어 왔으며(구법 제17조~제19조), 구법 제21조는 음반의 저작자를 제작자(producer)로 규정한다. 개정법 역시 이러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신설된 제208조 제3A항 이하에서도 대가의 분배 당사자를 일관되게 "owner of the copyright in a sound recording(음반의 저작권자)"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음반을 저작인접권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그 권리자를 "음반제작자"로 명명하는 한국 저작권법 체계(저작권법 제2조 제6호, 제78조 이하)와 법제상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의 이 표현을 한국법상 대응 개념인 "음반제작자"로 옮겼다.

4) Department of Enterprise, Tourism and Employment (Ireland), "Change to Irish copyright law following EU court ruling", gov.ie 보도자료, 2026. 4. 30. 〈https://www.gov.ie/en/department-of-enterprise-tourism-and-employment/press-releases/change-to-irish-copyright-law-following-eu-court-ruling/〉, (검색일: 2026.9.23.).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Judgment of 8 September 2020, RAAP(Recorded Artists Actors Performers) v PPI(Phonographic Performance (Ireland)), Case C-265/19, ECLI:EU:C:2020:677. 〈https://infocuria.curia.europa.eu/tabs/jurisprudence?sort=DOC_DATE-DESC&searchTerm=%2522ECLI%253AEU%253AC%253A2020%253A677%2522〉, (검색일: 2026.9.23.).

5) 위 판결, 특히 지침 2006/115/EC 제8조 제2항의 해석 부분.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공포되었으며 2026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7)]

2. 주요 내용

1) 적절한 대가의 분배 원칙 신설

개정법 제2조(a)호는 구법 제208조에 제3A항 내지 제3H항을 신설하는 규정으로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사이의 적절한 대가 분배에 관한 단계적 규범 구조를 정하고 있다.[8)]

첫째, 법정 기본 원칙으로서 합리적인 징수 경비를 공제한 적절한 대가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된다(제3A항). 둘째, 균등 분배가 어느 일방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다른 비율로 분배할 수 있다(제3B항). 셋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순회법원(Circuit Court)에 분배 명령을 신청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6개월(또는 합의로 단축된 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가의 분배 방식을 정하는 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순회법원에 할 수 있다(제3C항, 제3D항). 순회법원은 특히 해당 음반에 대한 실연자 기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배 명령을 내린다(제3E항). 개정법은 또한 사정 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명령 변경 제도도 함께 신설하였다. 명령의 당사자는 명령 이후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순회법원에 명령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명령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F항, 제3G항). 법원은 신청에 대하여 기존 명령을 확인하거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제3H항).

2) 보호 대상 자격의 확대

개정법 제4조(c)호는 구법 제287조의 적격국(qualifying country) 정의에 (d)호를 신설하는 규정으로서, 이에 따라 ⅰ) 1996년 제네바에서 채택된 WIPO 실연·음반조약(WPPT), 또는 ⅱ) 1961년 로마에서 체결된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로마협약)의 당사자인 국가·영토·지역 등 모든 실체가 적격국에 포함되었다.[9)]

구법 제287조는 구법 제3편(실연에 관한 권리) 및 제4편(실연자의 인격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의 규정이다. 이 조문은 세 가지 개념을 차례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먼저 '적격국(qualifying country)'이 무엇인지를 정한다. 다음으로 이 적격국을 이용하여 '적격 개인(qualifying individual)'을

6)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mendment) Bill 2025 (No. 33 of 2025), 〈https://data.oireachtas.ie/ie/oireachtas/bill/2025/33/eng/initiated/b3325d.pdf〉, (검색일: 2026.9.23).

7)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mendment) Act 2026 (Commencement) Order 2026, S.I. No. 167/2026, 〈https://www.irishstatutebook.ie/eli/2026/si/167/made/en/print〉, (검색일: 2026.9.23).

8)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mendment) Act 2026 (No. 4 of 2026) 제2조(Amendment of section 208 of Principal Act) (a)호.

9)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mendment) Act 2026 (No. 4 of 2026) 제4조(Amendment of section 287 of Principal Act) (c)호.

정의하는데, 적격국의 국민이거나 적격국에 주소를 두었거나 통상 거주하는 사람이면 이에 해당한다. 국적과 주소·거소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두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이 적격 개인 가운데 아일랜드와 연결된 사람만을 추려서 '적격인(qualifying person)'으로 정의한다.

개정 전에는 적격국이 아일랜드, 다른 EEA 회원국, 그리고 제28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로 한정되어 있었는데,[10] 아일랜드 정부의 규제영향분석 문서에 따르면 후자의 지정 조항에 따라 실제로 지정된 국가 사례는 없었다.[11] 이 때문에 아일랜드 국적·주소·거소를 가지지 않았거나 EEA 밖에 주소·거소를 둔 실연자는 적절한 대가의 분배에서 제외되는 구조였다. 그런데 이번 (d)호 신설로 WPPT 및 로마협약 당사국의 국민이거나 그 국가에 주소·거소를 둔 실연자도 적절한 대가 분배의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즉, 종전에 상호주의에 따라 국가를 개별 지정하는 방식(제289조)이 실효성을 갖지 못했던 점을, 조약 가입 여부라는 포괄적 기준으로 대체한 것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개정)법 2026」은 CJEU의 RAAP v PPI 판결에 따라, 아일랜드가 실연자 보호의 인적 범위를 국제조약(WPPT·로마협약) 가입국까지 확대하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간 적절한 대가의 분배 기준을 법정 균등분배 원칙—당사자 합의에 의한 변경—법원의 보충적 조정이라는 3단계로 재편한 입법이다. 한국은 음반을 저작인접권의 대상으로 분류하여 음반제작자에게 별도의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어 아일랜드의 저작권 단일주의와는 법제상 차이가 있으나,[12]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사이의 보상금 분배를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실질적 문제는 공통된다. 따라서 이 입법례는 우리 저작권법상 보상금 분배 기준을 법정 균등분배 원칙과 협의·재정 절차로 이원화하거나, 외국인 보호 요건을 조약 가입 여부와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 유용한 비교법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0) 구법 제289조제(1)항은 "정부는 명령(order)으로 자국의 법에 따라 아일랜드 실연(Irish performance)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정부가 인정하는 국가·영토·지역을 이 편(제3편) 및 제4편에 따른 보호를 받는 적격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1) 아일랜드 기업·관광·고용부(Department of Enterprise, Tourism and Employment), 법안 관련 규제영향분석 자료(Screening Regulatory Impact AnalysisGeneral Scheme of the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mendment) Bill 2024). 〈https://enterprise.gov.ie/en/legislation/legislation-files/screening-ria-general-scheme-of-the-copyright-and-related-rights-amendment-bill-2024.pdf〉, (검색일: 2026.9.24.).

12) 아일랜드 구법(2000년법)은 제17조에서 저작권(copyright)이라는 하나의 재산권에 문학·음악 등 전통적 저작물과 음반·영화·방송을 나란히 같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제21조는 저작자(author)라는 하나의 개념에 음반제작자, 영화제작자, 방송사업자를 모두 포섭하고 있다. 다만, 실연자(performer)는 음반제작자와 달리 저작자(author)로 분류되지 않고, 별도로 제3편(Rights in Performances)과 제4편(Performers: Moral Rights)에서 독자적인 권리 체계를 부여받고 있다.

참고자료

-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mendment) Act 2026, 전문. 〈https://www.irishstatutebook.ie/eli/2026/act/4/enacted/en/pdf〉, (검색일: 2026.9.22.).
- Department of Enterprise, Tourism and Employment (Ireland), "Change to Irish copyright law following EU court ruling", gov.ie 보도자료, 2026. 4. 30. 〈https://www.gov.ie/en/department-of-enterprise-tourism-and-employment/press-releases/change-to-irish-copyright-law-following-eu-court-ruling/〉, (검색일: 2026.9.23.).
-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Judgment of 8 September 2020, RAAP(Recorded Artists Actors Performers) v PPI(Phonographic Performance (Ireland)), Case C-265/19, ECLI:EU:C:2020:677. 〈https://infocuria.curia.europa.eu/tabs/jurisprudence?sort=DOC_DATE-DESC&searchTerm=%2522ECLI%253AEU%253AC%253A2020%253A677%2522〉, (검색일: 2026.9.23.).
-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mendment) Bill 2025 (No. 33 of 2025), 〈https://data.oireachtas.ie/ie/oireachtas/bill/2025/33/eng/initiated/b3325d.pdf〉, (검색일: 2026.9.23.).
-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mendment) Act 2026 (Commencement) Order 2026, S.I. No. 167/2026, 〈https://www.irishstatutebook.ie/eli/2026/si/167/made/en/print〉, (검색일: 2026.9.23.).
- Department of Enterprise, Tourism and Employment, Screening Regulatory Impact Analysis General Scheme of the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mendment) Bill 2024, 〈https://enterprise.gov.ie/en/legislation/legislation-files/screening-ria-general-scheme-of-the-copyright-and-related-rights-amendment-bill-2024.pdf〉, (검색일: 2026.9.24.).